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1408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김정원,박환철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유나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유나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565,805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22.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1.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7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1.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8,7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E 주식회사는 2016. 7. 1. 피고 B에게 12,000,000원을 만료일자 2021. 7. 1.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B은 위 차용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위 채권을, E 주식회사는 2018. 12. 4.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2018. 12. 3. 기준 원금 12,000,000원 이자 1,385,090원), F 주식회사는 2022. 2. 24.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2022. 7. 25. 기준 원리금은 25,565,805원(원금은 12,000,000원)이다.

나. 상속재산 분할 및 처분 경위

1) 피고 B의 어머니인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7. 11. 2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피고들 및 H이 있고 상속분은 각 1/4이다.

2) 피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8. 4.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D이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8.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 D은 2018. 6. 21. 이 사건 부동산을 I에게 대금 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18.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분할 당시 피고 B의 재산 상황

상속재산 분할 당시 B의 적극적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채무는 의정부지방법원에 3,000,000원(2017. 1. 11. 공공정보등재), J은행에 5,424,000원(2013. 3. 27. 채무발생, 2018. 3.경 기준), K은행에 785,000원(2016. 11. 24. 채무발생, 2018. 4. 3.경 기준), E 주식회사에 12,000,000원(이 사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등 합계 21,20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5,565,805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22.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C, D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 C, D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관한 피고 C, D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사해행위에 따른 수익자인 피고 C, D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 C,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은 ‘자신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B에게 상속지분의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C, D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 C, D으로서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각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 시가가 15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1/4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37,5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8 만큼 취소하기로 한다.

다. 소결

1)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 D은 원고에게 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

1층 내지 4층 각 505.8㎡, 지하 49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남양주군 대 930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5.1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620분의 54.76 ㎡.

